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권영진·박해철·김상훈

이만희 · 서천호 · 김승수

우재준 • 조승환 • 엄태영

강대식 · 인요한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, 사업추진 과정에서인·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39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에 (96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96)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로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